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입학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전화 041-660-170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서대학교

**2022학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편입학 모집요강**

한서대학교 교류협력처

I.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학부	모집학과		전형유형
			정원 외
			외국인 편입
항공융합 학부	글로벌 언어협력학과	영어전공	모집정원제한없음
		중국전공	
		일본전공	
		국제협력전공	
	공항행정학과	행정전공	
		홍보전공	
	항공조종전공		
	항공보안시스템전공		
	항공정비전공		
	항공컴퓨터전공		
	인프라시스템학과	항공전기전공	
		항공환경전공	
		공항토목전공	
		공항건축전공	
	항공신소재 화학학과	신소재전공	
화학공학전공			
항공학부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모집정원 제한없음
	항공기계학과		
	항공운항학과 (조종사양성)		
	헬리콥터조종학과		
	항공전자공학과		
	무인항공기학과	무인항공기 시스템전공	
		드론응용전공	
		항공산업공학과	
	항공교통 물류학과	항공교통학전공	
		물류학전공	
	항공관광학과(승무원양성)		

학부	모집학과		전형유형
			정원 외
			외국인 편입
보건학부	의료복지공학과		모집정원 제한없음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보건상담복지학과		
	피부미용화장품과학과		
	바이오식품의과학과		
	해양바이오산업학과		
디자인 · 엔터테인먼트 학부	디자인융합학과	의상디자인전공	모집정원 제한없음
		시각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영화영상학과		
	문화재보존학과		
	실용음악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융합 교양 학부	호텔카지노관광학과		모집정원 제한없음
스포츠학부	경호비서학과		모집정원 제한없음
	레저해양스포츠학과		

II. 전형일정

1.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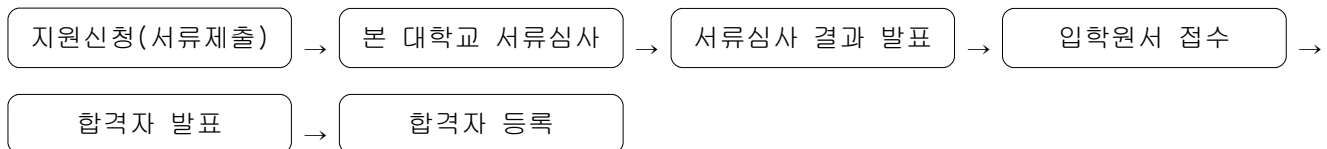
가. 전교육과정 이수자

구 분	모집 시기		장 소	비 고
	수시모집 (후기)			
원서접수	2022. 06. 27. ~ 2022. 07. 01		본 대학교 교류협력처	마감일 17:00까지
제출서류 마감	2022. 07. 08		본 대학교 교류협력처	마감일 17:00까지
합격자 발표	국외체류자 : 2022. 07. 12 국내체류자 : 2022. 08. 09		본 대학교 교류협력처	개별 통보
합격자 등록기간	국외체류자 : 2022. 07. 18 ~07. 22 국내체류자 : 2022. 08. 16 ~08. 19		전국 국민은행 및 본대학교 재무과	합격자 발표시 안내

나. 부모 모두 외국인

구 분	모집 시기		장 소	비 고
	정시모집 (전기)	수시모집 (후기)		
원서접수	2021. 12. 27. ~ 2021. 12. 31	2022. 06. 27. ~ 2022. 07. 01	본 대학교 교류협력처	마감일 17:00까지
제출서류 마감	2022. 01. 07	2022. 07. 08	본 대학교 교류협력처	마감일 17:00까지
합격자 발표	국외체류자 : 2022. 01. 11 국내체류자 : 2022. 02. 08	국외체류자 : 2022. 07. 12 국내체류자 : 2022. 08. 09	본 대학교 교류협력처	개별 통보
합격자 등록기간	국외체류자 : 2022. 01. 17 ~ 01. 21 국내체류자 : 2022. 02. 14 ~ 02. 18	국외체류자 : 2022. 07. 18 ~07. 22 국내체류자 : 2022. 08. 16 ~08. 19	전국 국민은행 및 본대학교 재무과	합격자 발표시 안내

2. 지원절차



III. 편입학 지원 자격

1.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국적			외국국적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12년	12년	12년	-	-	-	-	-

2. 심사기준 (공통)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가. 한국어능력시험평가(TOPIK) - 인문계열 3급 이상자, 예·체능계열 2급 이상자
- 나. 본 대학교 어학교육원 및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어학연수 기관에서 6개월 한국어과정을 이수하고 추천을 받은 자
- 다. 본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추천학생
- 라. UN이나 유네스코, 적십자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해당국의 정부기관에서 한국의 4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받은 자

3. 지원자격

가. 3학년 편입학 지원자

-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정규 4년제 대학교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나. 2학년 편입학 지원자

- 정규 4년제 대학교 1년 과정을 수료한 자

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1)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2) 대상
 - 부·모 및 학생 모두 생득적 외국인인 경우와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복수국적자 제외)

3) 재학기간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 요건 부여

라.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단,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일 경우,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
-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신체검사 심사기준

가. 대상 :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서 합격증(원본)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제출

나. 신체검사 장소 : 항공신체검사 국토교통부 지정병원

※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 지원자는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1부,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공종사자(1종)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상에 “**적합**” 판정만 인정·적용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상 “**적합**” 판정만 인정·적용합니다.

5.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수량	유의사항	비고
1	◆ 입학원서	1부	본 대학교 소정양식	
2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원본	해당 항목 각 1부	1.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재학증명서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2.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 아포스티유(APOSTI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2) 해당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 입증서류 3) 중국 국적자는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입증서류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초, 중, 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출
3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국적 표기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1) 본국 신분증 복사본, 국적 확인 가능 관계서류 2) 중국 국적자는 호구부 제출 (공증번역본) ※부/모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명서류 (영어/한글원본 또는 공증번역본) 제출 - 특이사항 예시: 이혼, 재혼, 사망, 실종, 한국 국적 취득 등 - 증빙서류 예시: 이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부/모 한국 국적 취득증명서 등
4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 재정보증서	택1 각 1부	1. 본인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2. 부/모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 부/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입학지원서에 포함) 3. 재정보증서 - 재직증명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재정보증동의서 (본 대학교 소정양식)	1) 은행잔고증명은 본인 및 직계가족명의 미화 \$18,000 이상의 잔고증명서 제출 (어학연수(한국어과정) 신청 시 미화 \$10,000 이상) - 국내·외 본인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제출 시 기타서류 제출 불필요 - 본교 출신자는 미화 \$10,000 이상의 잔고증명서 제출 (단, 반드시 국내은행 본인 계좌만 인정) - 원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유효기간이 있는 재정증명의 경우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인정함 2) 국내·외 부/모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제출 시 부/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원본,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본과 원본을 같이 제출 3) 재정보증인은 교내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한함 (전임교수 1인당 1명만 유효 - 졸업 시까지)
5	◆ 어학능력 입증서류	택1 각 1부	1. 한국어/영어 공인시험 성적표 2. 본교 어학연수 수료 (예정) 증명서 및 어학교육원장 추천서	수학능력 관련 자격요건 (공통사항,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자 : 단, 예·체능계 학과는 2급 이상자 2)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3) 본교 어학교육원 및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어학연수 기관에서 15주 이상 한국어과정 이수(예정)한 자로서 소정 심사과정을 거쳐 추천받은 자 4) 영어능력시험 : TOEFL 530, CBT 197 / iBT 71, IELTS 5.5, TEPS 600점 이상 (영어 트랙에 한해 제출) * 영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국가는 영어능력기준 예외 * 본 자격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6	◆ 여권사본	1부	-	-
7	◆ 사진	5매	규격 3cm×4cm	뒷면 영문 성명 기재
8	◆ 연수계획서	1부	본 대학교 소정양식	연수계획을 상세히 작성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 공증번역 불필요)
9	◆ 건강진단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검사결과지 제출
10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본 대학교 소정양식	-
11	◆ 학력조회 동의서	1부	본 대학교 소정양식	-
12	◆ 번역자 확인서	1부	본 대학교 소정양식	영어 또는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영어 및 한국어로 번역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증번역 불필요)
13	◆ 서약서 (이행각서)	1부	대학원 입학신청자 중 해당자	학부 또는 대학원 입학 시 TOPIK 3급이 없다면 서명 후 제출해야 함
14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자격 변경 시 반드시 교류협력처 및 교학처에 통보해야 함 (비자 연장 시 등)
15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전교육과정 이수자만 해당
16	◆ 대학재학(수료)증명서	1부	-	편입지원자만 해당
17	◆ 대학성적증명서	1부	-	편입지원자만 해당

※ 허위서류 제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확인 불가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편)입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본교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로 해당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유학

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학생비자 발급승인 여부는 해당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 고유 권한이기에 비자 미 취득 시 입학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재학생도 제적 처리됩니다.

(재학기간동안 유학생 비자 외에 변경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바람 - 변경 시 반드시 사전신고)

※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 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지원 대상자는 입학원서 등 제출하는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전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1지방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입학원서를 제외한 기타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접수 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추가로 졸업증명서를 교류협력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습니다.
6. 한글, 영어 이외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및 번역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6. 전형별 성적반영비율 및 전형료

IV. 전형별 성적반영비율 및 전형료

구분	전형방법	전형료
	서류심사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00%	50,000
전 교육과정 이수자	100%	50,000

V.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금지

- 가.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전형 내에서는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합니다.

2. 이중등록 금지

- 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은 지체 없이 무효로 합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총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3. 전형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가. 입학한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은 취소합니다.
- 나.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 가. 입학원서에는 전형기간 중 연락이 될 수 있는 국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나. 기재를 잘못하였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보완 요구자료 포함)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
 - 부정행위자
- 라. 지원자의 전형 성적이 현저하게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입학 전형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본 모집요강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니 지원 전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